

朝鮮 前期의 奴婢 研究

李 輽 禮*

序 言

- I. 公奴婢의 私奴婢
- II. 奴婢의 立役과 身貢
 - 1. 公奴婢의 立役과 身貢
 - 2. 私奴婢의 立役과 身貢
- III. 奴婢의 身分의 性格
- IV. 奴婢의 社會經濟的 機能

結 言

* 史學科 副教授

序　　言

朝鮮王朝時代는 엄격한 社會身分에 의한 階級秩序가 確立된 時期이었다. 그러므로 朝鮮王朝時代의 社會階級에 대하여는 누구나 至大한 關心을 모으고 있는 바이려니와, 그 중에서도 奴婢는 良人層과 더불어 直接 生產에 종사하는 階層으로써 全 人口 중에 상당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奴婢問題는 土地問題와 아울러 社會經濟史的인 面에 있어서 重要한 두 가지 問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土地問題에 비해서는 奴婢問題가 다소 소홀히 取扱되어온 感이 없지 않다. 종래 奴婢에 대한 研究는 先學에 의하여 몇 개의 보람있는 研究成果가 發表되었거니와, 그것은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軍事的 法制的 測面 등으로 考究되어 왔다.^① 그러나 朝鮮前期에 比하여 朝鮮後期의 奴婢研究는 더욱 閑散한 便이라 할 것이다.^②

筆者は 당초에 朝鮮後期의 身分制의 變動에 關心을 가지고, 그 중에서도 奴婢身分의 變動에 대한 問題를 取扱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朝鮮前期의 奴婢問題를 一段 整理한 然後에 朝鮮後期의 奴婢問題를 取扱하는 것이 보다 좋은 方法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于先 先學들의 研究를 基底로 하여 朝鮮前期의 奴婢問題를 대상으로 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朝鮮前期의 奴婢에 대하여 奴婢의 種類를 비롯하여 奴婢의 義務負擔의 內容인 立役과 身貢, 그리고 奴婢의 社會的 地位와 奴婢의 社會經濟的 機能에 대하여 考察하고자 하는 바이다. 本稿는 새로운 問題의 展開에 있는 것이라 하기 보다는, 다만 朝鮮後期의 奴婢研究의 基礎作業으로써 先學들의 研究成果를 為主로 朝鮮前期의 社會身分으로서의 奴婢問題를 考究하는데 그치려 한다.

I. 公奴婢와 私奴婢

社會階層의 最下級은 賤人이었고,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公・私賤, 즉 公・私奴婢이었다. 奴婢는 그 所有者에 따라 公奴婢와 私奴婢로 나누어진다. 公・私奴婢의 概念에 대하여는 흔히 引用되는 바이지만 高麗史 卷85, 刑法 2, 奴婢에 관한記事에서 “士族의 家에 世傳되면서 使役되는 者는 私奴婢라고 하고 官衙州郡에서 使役되는 者는 公奴婢이다”라고 하였으며, 星湖僊說 卷 4 下에서는, “公・私賤이란, 國俗에 內奴・寺奴・驛奴・校奴 등의 類는

註 ① 周藤吉之：鮮初に於ける奴婢の辨正と推刷とに就いて，青丘學報，第22號，1935，周藤吉之：高麗朝より朝鮮初期に至る奴婢の研究，歴史學研究，第9卷 1, 2, 3, 4號，1939。李相伯『賤者隨母考』——良賤交婚出生者の身分歸屬問題，震擅學報，第25～27合併號，1964。丘秉朔：韓國社會法制史特殊研究——朝鮮王朝初期의 奴婢問題을 中心으로，友石文理・法經大論文集 第1輯，1967。金錫亭：朝鮮封建時代農民の階級構成，1960，學習院 東洋文化研究所刊，東京。

② 다만 前掲 金錫亭 著書에서 다루고 있고, 그밖에 平木 實：17世紀에 있어서의 奴婢從良（韓國史研究 3, 1969）이 있을 뿐이다。

公賤이며, 士庶의 奴를 私賤이다”라고 함과 같이 内奴・寺奴・驛奴・校奴 등 中央 및 地方의 國家機關에서 使役되는 奴婢는 公奴婢이며 士族 혹은 庶民의 집에서 使役되는 奴婢는 私奴婢인 것이다. 즉 奴婢의 上典이 王室이거나 國家機關인 경우는 公奴婢라고 하고 그의 上典이個人인 경우에는 私奴婢라고 하였다.

公奴婢 중에서도 内需司 소속의 奴婢는 内奴婢, 혹은 王室의 奴婢라는 뜻에서 宮奴婢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官衙가 普通의 行政機關일 경우에는 그 소속의 奴婢를 보통 官奴婢라고 하였지만, 그 官衙가 驛이라든가 鄉校와 같이 특수한 官衙인 경우에는 그들을 驛奴婢 또는 校奴婢라 불렀다. 그리고 公奴婢를 朝鮮 王朝 時代를 통하여 寺奴婢 또는 寺社奴婢라고도 불렀던 것은 朝鮮 王朝 時代의 公奴婢가 주로 朝鮮 初期에 寺社奴婢에서 屬公(沒收)된 奴婢들로 충당되었기 때문이다. 寺社奴婢가 이렇듯 公奴婢 全體를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때로는 官奴婢만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 혹은 그 중에서도 보통의 官奴婢만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公奴婢는 다시 選上奴婢와 納貢奴婢로 구분된다. 모든 公奴婢는, 나이 16세에서 60세에 이르기까지, 選上奴婢이거나 納貢奴婢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다. 대체로 京中에 사는 公奴婢의 경우에는 그들이 당연히 選上奴婢가 되었으며, 地方에 사는 公奴婢는 選上奴婢와 納貢奴婢로 구분되는 것이다. 地方에 사는 選上奴婢로서는 地方의 官衙에 일정한 기간 동안 勞役에 종사해야 하거나 京中에 올라와 일정한 기간 동안 勞役에 종사해야만 했다. 京中에 立役하는 選上奴婢는 2番으로 나누어 交代하면서 勞役을 담당하였고, 地方 官衙에 立役하는 選上奴婢는 7番으로 交代를 나누어 立役하게 되어 있었다.

地方에 사는 選上奴婢 중에서도 京中에 立役하는 選上奴婢에게는 2名의 奉足 奴婢를 주었으므로 選上奴婢의 戶首는 奉足으로부터 每 1年마다 緜布와 正布 各 1匹씩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奉足이 되었던 奴婢는 그의 戶首에게 緜布와 正布 各 1匹을 바치기만하면 그것으로써 그들의 義務를 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選上奴婢의 立役體制를 실제 奴婢의 處地에서 본다면, 奴婢도 家族이 있고 살림을 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奴婢의 한 家庭에서는, 그 戶首가 되는 사람의 妻子가 있어 그들이 바로 奉足이 되는 것이다. 앞서 말해둔 바와 같이, 立役을 담당해야 할 年齡의 公奴婢는 選上이거나 納貢 중의 어느 하나의 義務를 짊어져야 하였기로, 가령 이 年齡에 해당되는 세 家族을 가진 한 奴婢의 家庭이 있다면, 京中에 選上奴婢로 立役하는 戶首에게 나머지 家族 2名이 奉足으로 주어져서, 사실상 2人分의 奴婢의 義務가 免除되는 것이다. 그러나, 京中에 立役하는 選上奴婢와는 달리 그 地方의 官衙에 立役하는 選上奴婢에게는 奉足이 주어지지 않았다. 納貢奴婢는, 經國大典 戶典 儉賦條에 의하면, 16세에서 60세에 이르기까지의 納貢奴婢의 義務로서, 奴는 1年에 緜布 1匹과 楷貨 20張, 婦는 緜布 1匹과 楷貨 10張을 納入해야 한다라고 规定되어 있다. 당시에 楷貨 10張은 緜布 半

匹에 해당하였으므로 奴는 1년에 綿布 2匹이며 婢는 1년에 綿布 1匹半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公奴婢 중에는 그들의 義務 内容이 勞役이냐 現物에 의한 納貢이냐에 따라 選上奴婢와 納貢奴婢로 구분되었다.

한편 私奴婢는 그들의 上典에게 勞力を 提供하거나 身貢을 바치었다. 즉 그들은 그들의 上典집에서 農業勞動이나 雜役에 努力を 提供하거나 그들의 身貢을 上典에게 바치었다. 그들의 身貢은 公奴婢가 國家에 바치는 義務量과 거의 같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그 根據로서는 續大典 刑典 私賤條에 “隱漏奴婢推尋者 雖累年之後 只徵三年身貢”이라고 하였는데, 그 細註에서 “一年貢 奴綿布二匹 婢綿布一匹半”이라 하고 있으므로 이로 미루어서 朝鮮 前期에도 私奴婢에 대한一般的인 收取의 基準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③ 그리고 公奴婢에 대한 收取의 基準도 아마 당시의 私奴婢의 收取 基準에서 由來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私奴婢가 兩班이라는 上典을 모시고 있으나 國家에 대하여 全혀 關係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國家에서 私奴婢에 대해서는 雜色軍의 編制에 包含하는 以外에 별다른 義務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土地 耕作者로서 國家에 부담해야 할 田稅·貢納·賦役의 義務 등이 있었다.

朝鮮 王朝 前期에 있어서 奴婢는 全體 人口 중 過半數가 되지는 못하였지만 결코 無視할 정도로 少數를 占하는 것은 아니었다. 朝鮮 初期의 奴婢의 數에 대하여 우리는 정확한 數字를 알 수 없으나, 朝鮮王朝實錄에서 보이는 奴婢의 數를 살펴보면, 太宗 6年에 寺社奴婢 8萬餘口가 屬公되었다 하고,^④ 太宗 17年의 丁酉正案에는 公奴婢만이 119,602口(奴 59,585 · 婢 60,017), 世宗 21年에는 21萬數千口, 世祖 7年에 20萬餘口, 그리고 成宗 15年에는 京外 奴婢만이 35萬餘口에 達하고 있다.^⑤ 그리고 朝鮮 初期에 寺社奴婢를 屬公시키기 以前의 公奴婢의 數는 太宗 10年 5月 朴昌의 上書에서 나타나는 10萬이란 數字에서^⑥ 太宗 6年 3月의 屬公 寺社奴婢 8萬口를 除하면 약 2萬名 가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公·私奴婢의 全 人口에 대한 比率을 살펴보기 위하여 당시의 戶口數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朝鮮 初期의 戶口 統計에 의하면 戶口數와 人口數는 1戶當 2~3口에 해당된다.^⑦ 물론

註 ③ 金錫亨: 上揭書 p. 45.

④ 太宗實錄 卷11, 太宗 6年 3月 丁巳條.

⑤ 太宗實錄 卷33, 太宗 17年 6月 丁亥條. 世宗實錄 卷85, 世宗 21年 閏 5月 己未條. 世祖實錄 卷24, 世祖 7年 5月 壬申條. 成宗實錄 卷169, 成宗 15年 8月 丁巳條.

⑥ 太宗實錄 卷31, 太宗 16年 5月 辛亥條.

⑦ 上揭 周藤吉之: 高麗末期より朝鮮初期に至る奴婢の研究 p. 14에서 鮮初의 戶口數와 人口數量 太宗實錄 卷7, 太宗 4年 4月 乙未條, 太宗實錄 卷12, 太宗 12年 6月 丙辰條, 世宗實錄 卷148~155, 地理志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算出하여 있다.

年 度	戶 數	口 및 丁數	一 戶 當
太 宗 4 年	153,404	312,786(口)	2.104(口)
太 宗 6 年	180,246	370,365(丁)	2.054(丁)
世 宗 實 錄 地 理 志	226,410	702,951(口)	3.338(口)

이와 같은 戶口의 把握이 매우 불충실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世祖 때에 軍額의 推刷에 당하여 忠淸道는 2萬戶에서 11萬戶로, 慶尙道는 4萬戶에서 30萬戶가 되어 있다.^⑧ 그리고 世祖 12년에 大司憲 梁誠之의 上疏에 의하면, 우리 나라 人民이 무려 1百萬戶라고 하였는 바,^⑨ 世宗 때의 1戶當 3.33 比率로 計算하면^⑩ 당시 1百萬戶의 人口는 약 340萬이 된다. 이 人口數를 成宗 때 公賤 35萬으로 비교하면 公賤이 全人口의 10分의 1이 된다. 그리고 成宗 9年 어느 官吏의 上疏에서 보면, 지금 齊民 중에 私賤은 十居八九이며 良民은 僅一二라 표현하고 있는 바,^⑪ 士大夫家의 奴婢가相當한 數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成宗 15년에 韓明渾는 公賤의 推刷에 있어서 未推刷者가 10餘萬이 있고 지금 公·私賤口 중에 逃亡하여 숨어 사는 者가 무려 百萬이라고 하였다.^⑫ 公·私奴婢의 數를 당시의 人口 340萬에 비하면 약 3分之1이 된다. 그러나 世祖·成宗 때의 全 人口는 340萬을 넘는다고 보여지는 것은 당시에 把握되지 않는 人口가 있을 것이기에 대략 4, 5百萬으로 추정되고 全體 人口가 보다 많은 것으로 추산되는 것이려니와, 그 중에 公·私奴婢는 과연 어느 정도이었는지는 仔細치 않다.^⑬

II. 奴婢의 立役과 身貢

奴婢는 그들의 上典인 所有者가 國家機關이나 王室인가 혹은 個人인가에 따라 公奴婢와 私奴婢로 구분되고, 또 奴婢는 그들의 上典에 대한 義務 負擔의 內容이 勞力인가 現物인가에 따라 選上奴婢(私賤인 경우는 立役奴婢)와 納貢奴婢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함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즉 選上이라 하면 一定한 기간 동안, 中央 또는 地方의 官衙에 身役을 제공하는 것이며, 納貢이라 하면 身貢으로써 每 1年마다 繼布 등을 上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選上奴婢와 納貢奴婢는 별다른 制限없이 交替되기도 하였다. 이제 奴婢의 立役과 身貢을 中心으로 奴婢의 生活樣相을 살펴 보고자 하거니와 便宜上 公奴婢와 私奴婢로 나누어 考察하기로 한다.

1. 公奴婢의 立役과 身貢

公奴婢 중에 義務 負擔의 內容에 따라 選上奴婢와 納貢奴婢로 區分되고, 그 중 選上奴婢는 京中이나 地方의 官衙에 一定한 기간 동안 無償으로 勞役에 종사하는 奴婢이거니와, 京中에 立役하는 選上奴婢는 2番으로 나누어서 分屬하고 地方의 官衙에 立役하는 選上奴婢는 7番으로 나누어 立役하게 되어 있었다고 함은 앞서 말해 둔 바와 같다. 그들은 모두 京中 各司나

註⑧ 世祖實錄 卷34, 世祖 10年 8月 壬午條.

註⑨ 世祖實錄 卷40, 世祖 12年 11月 庚午條.

註⑩ 註⑦ 參照.

註⑪ 成宗實錄 卷91, 成宗 9年 4月 己亥條.

註⑫ 成宗實錄 卷170, 成宗 15年 9月 壬寅條.

註⑬ 周藤吉之씨는 대략 世祖 成宗 때의 全人口를 4, 5百萬으로 추정하고, 그 중 公私奴婢는 150만 즉 3分之 1 以下가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다. 周藤吉之 上揭書, p. 15.

地方의 官衙에서 賤役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労役에 종사하였다.

京中에 立役된 奴婢는 經國大典 五, 刑典에서 보이는 諸司의 差備奴와 跟隨奴의 定額에 준하여 京中의 各司에 立役되었다. 經國大典에 의거하여 京中의 官司 81個司에의 立役奴婢의 定額을 算出하면, 差備奴 2,111口, 跟隨奴 1,480口 合計 3,591口이다. 이밖에 掌隸院에 隨時로 使役되거나 各司 奴子의 闕員있는 곳에 備꾸기 위한 餘員 262口가 있어 이를 合算하면³, 853이며, 選上에 定員以上 番上시키는데 대하여 成宗 때에 그 弊害가 論議되고 있다.

宮闈 안에도 奴婢가 使役되어 大殿을 비롯하여 大殿을 비롯하여 많은 奴婢가 있었고 그 소속 奴婢의 名稱은 房直·城上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있었다. 經國大典 五, 刑典 闕內各差備條에 의하면, 文昭殿 大殿 王妃殿 그리고 世子宮만 하더라도 計 390名이며, 그밖에 王子宮 宗親 1品에서 5品까지의 文武官에게 각각 跟隨奴의 數가 여러 가지 名稱으로 定額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2番으로 나누어 입역하고 있었다. 以上은 京中에 있어서의 公賤이 選上하는 경우이거나, 公賤은 地方에서도 諸邑·諸營·鄉校 등을 비롯하여 驛(轉運急走奴) 水運(水站의 水夫) 등에 定屬되어 立役하였다. 그 중 諸邑 諸營만의 奴婢의 定員을 經國大典 五, 刑典 外奴婢條에 의하여 表示하면, 府는 600名, 大都護府와 牧은 각각 450名, 都護府는 300名, 郡은 150名, 縣은 100名, 屬縣은 50名이며, 諸營은 兵使鎮이 200名 水使鎮이 120名으로 되어 있다.

公賤의 立役 중, 地方의 경우보다 京中에의 選上의 경우는 보다 무거운 負擔이었다. 따라서 地方에 立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京中에의 選上奴婢에게는 奉足 2名을 주어 그 奉足이 되는 奴婢에게는 戶首에게 2匹의 布를 바치면 그밖의 義務는 없었으나 奴婢도 家族이 있고 살림을 하고 있었으므로 奴婢의 한 家庭에는 그 戶首되는 者의 妻나 子女들이 있어 그들이 奉足이 되는 것이라 함은 앞서 말해 둔 바 있다. 이와 같이 選上奴婢의 戶首에게 2名의 奉足을 준 것은 勞動力を 무상으로 國家에 바쳐야만 했던 그들에게 2人分의 奴婢의 義務를 免除해 주는 뜻으로 理解된다. 그러나 奴婢의 戶를 編成하는데 있어서 戶首 1人과 奉足 2人으로 삼고 있는 것은 당시의 良人에 比하여 보다 가혹한 處地에 놓여 있었음을 말해준다. 戶라고 하면 朝鮮 初期에 軍役을 비롯한 모든 役을 負擔시키기 위한 法制的單位이었다. 良人層의 役에 있어서는 最下의 경우 「三丁一戶」로서 3人の 男子 壮丁으로 1戶를 構成하고 있었다. 그런데 奴婢의 경우에는 「三口一戶」라고 하는 經國大典의 規定을 通하여 알 수 있듯이 女子까지도 包含된 것이기로 1戶라고 하는 奴婢의 한 살림으로 볼 때 그것은 良人層에 比하여 倍나 무거운 負擔이 되는 事實을 指摘할 수 있다. 즉 良人層의 戶는 女子를 제외한 法制의 戸인데 比하여 奴婢의 戶는 女子까지도 包含시켜 法制의 戸를 構成하였으니 奴婢의 役은 良人의 役에 比하면 倍나 무거운 것이 된다. 그리고 地方에 立役하는 奴婢는 全혀 奉足이 紿與되지 않았으나 가령 奴婢의 한 집안에 16세에서 60세에 이르기까지의 3 사람이 있다면 3 사람이 모두 立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京中에 사는 公賤의 경우는 그들이 당연히 選上奴婢가 되겠지만, 당시 京中 各司 奴婢의 十中八九가 地方에 居住하고 있었다. 外方 奴婢는 대개 가난한데 選上은 자못 苦役이었기로 役을 避하여 逃亡하는 者가 많았다. 또 公賤中에서도 조금이라도 富實한 者는 選上의 責任을 맡는 頭目奴子나 色吏 그리고 守令 등을 買收하여 選上을 避하거나 奉足으로써 鄉里에 남아 있다가 비싼 選上代立價^⑩를 바치고 立役이 免除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風潮에 따라, 가난한 奴婢까지도 눈 앞의 罪로움을 避하기 위하여서는 後日의 破產을 생각하지도 않고 비싼 選上代立價를 支拂하고 立役의 免除를 받으려 하였으니 選上된 奴婢는 그야말로 어찌할 수 없는 가난한 奴婢들만이 있음을 可히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選上奴婢의 苦役이 날로 더해지고, 또 그 結果, 立役을 避하려는 代立의 弊害가 날로 더해감에 따라 奴婢의 避役을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例컨대, 奴婢의 避役을 막기 위하여 選上奴婢를 罷을 때는 父母兄弟가 具存하지 않거나 너무 遠方에 있지 않는 者(6, 7日程 以內者)를 가려서 한다든지,^⑪ 遞番으로 往來에 피곤함을 덜어준다든지,^⑫ 京中 各司의 奴婢數를 各司 官員의多少·事務의 煩簡을 考慮하여 均配한다든지,^⑬ 選上에 있어서 弄奸이 있는 頭目奴婢나 色吏·守令 등을 嚴히 다스린다든지^⑭ 하여 國家 自體로서 그 운영의 妙를 거두려고 努力하였던 것이다. 한편 國家는 世宗 15年에 奴婢의 生活을 安定시키고자 侍丁歸養法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⑮ 그에 앞서 太宗 15年에는 各司에 奴婢를 定屬시킬 때에 한 家族의 奴婢를 1司에 定屬시키므로 그들의 生活에 보탬이 되도록 措處하기도 하였다.^⑯ 그러나 選上奴婢의 莫甚한 苦役에는 이렇다 할 變動이 있을 수 없기에 代立은 如前히 行해지며 그 弊害는 아주 심하였다. 이에 한 때는 選上奴婢의 代立은 禁止한 적이 있었으나 選上奴婢中에는 父母의 老患이나 妻子의 生計를 위하여 代立이 不可避한 경우가 없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만 代立을 禁止하는 것만으로는 逃亡하는 者만 늘어날 것이므로, 世祖 4年 11月에는 이 代立法을 다시 立法하기에 이른 것이다.^⑰ 그리고 그 代立價도 定額이 없이 많이 증수하였기로 成宗 元年에 1個月에 2匹을 超過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당시 6개월 交代勤務로서 1년의 選上代立價는 12匹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納貢 奴婢에 대한 그들의 義務內容도 經國大典에 명확히 보인다. 즉 選上이나 雜故로 因하여 身貢을 내지 않은 者를 除外한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納貢奴婢의 義務로서는, 奴

註 ⑩ 世宗 18年 당시의 選上代立價는 綿布 15匹이었으니 奴婢 身貢인 正布 1匹의 몇十倍나 되었다. 世宗實錄 卷74, 世宗 18年 9月 乙卯條。

⑪ 世宗實錄 卷20, 世宗 5年 5月 丁未條。

⑫ 世宗實錄 卷30, 世宗 7年 11月 壬子條。

⑬ 世宗實錄 卷86, 世宗 21年 9月 壬戌條. 端宗實錄 卷12, 端宗 2年 12月 戊寅條。

⑭ 世宗實錄 卷105, 世宗 26年 閏 7月 丁亥條. 成宗實錄 卷16, 成宗 3年 3月 己未條。

⑮ 世宗實錄 卷58, 世宗 14年 11月 丁丑條。

⑯ 太宗實錄 卷30, 太宗 15年 10月 己丑條。

⑰ 世祖實錄 卷14, 世祖 4年 11月 戊子條。

는 1年에 綿布 1匹과 楠貨 20張이며, 婢는 綿布 1匹과 楠貨 10張을 司贍寺에 바치도록 规定되어 있다. 公奴婢의 身貢額은 아마도 鮮初에 寺社奴婢들이 종래에 바쳐 오던 身貢額을 그대로 준용하게 된 것으로 생각되거니와, 太宗 7년의 革去寺社奴婢 身貢式例에 의하면, 壯奴는 米 平 3石, 無妻者는 2石, 壯婢는 2石, 無夫者는 1Stone, 奴婢相婚者는 正五升布 각 1匹, 15세 이하 60세 이상은 免徵한다고 규정되어 있다.^㉒ 이 身貢額은 종래의 寺社奴婢의 身貢과同一한 量일 것이며, 이것은 당시 元屬公奴婢의 身貢量에 比하여 훨씬 무거운 것이다. 그러므로 寺社奴婢를 革罷하여 屬公시킨 대부분의 公奴婢를 國家의 財源을 確保하기 위하여 納貢奴婢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절실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이처럼 무거웠던 奴婢의 身貢은 世宗 때에 접어들면서 가벼워졌으니, 世宗 7년 6月에는 奴婢身貢收納之法을 세워 奴는 1人當 元貢으로 正布 1匹과 餘楠貨 2張을, 婢는 元貢으로 正布 1匹과 餘楠貨 1張을 納付하게 하였다.^㉓ 또 이에 앞서 世宗 5년에는 經師巫覡이나 盲巫의 身貢을 경감 내지는 전면해 주었고,^㉔ 世宗 28年에는 身貢의 年分法을 論議하여 시행하는 등^㉕ 公賤의 年貢이 상당히 가벼워졌다.

그러나 世祖 때에 이르러 明에의 進獻을 비롯한 이웃나라 손님들에 대한 答賜禮物이라든가 濟州子弟의 進上馬價로서의 綿布의 수요가 倍로 많아지는 등 財政上의 理由로 奴는 綿布 1匹과 米 2斗, 婢는 綿布 1匹과 米 1斗로 定하여져서 다시 奴婢의 身貢이 무거워진 것이다.^㉖ 이 렇듯 增額되어 定해진 公賤의 身貢은 그대로 經國大典에 실려있으니 앞서 보인 內容과 같다. 따라서 가령 3名의 男女 壯年으로 構成된 奴婢 1戶가 있다면 1年에 5匹 내지 6匹의 綿布를 바쳐야 했기로 選上奴婢의 義務內容과 큰 差異는 없는 負擔으로 생각된다.

奴婢로부터 받아들이는 納貢의 手段은 종래에 五升布로서 받아오다가 太宗 10년에 五升布 대신으로 楠貨로서 받아들이기로 되었다.^㉗ 그리하여 太宗 때 이래 楠貨의流通에 따라 주로 楠貨를 中心으로 하여 米・布・錢 등이 併用되었던 것이니, 太宗 16년에는 革去된 寺社奴婢의 耕作하는 土地가 2結 미만일 경우에는 布貢을 바치게 하였으며,^㉘ 世宗 3년에는 耕作하는 土地가 3結 이상일 경우에는 典農寺 奴婢의 例에 따라 米貢을 바치게 하였다.^㉙ 그러나 차츰 楠貨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奴婢의 身貢을 楠貨로 받아들이는데는 어려운 問願가 提起되기도 하였다. 즉 世宗 5년에는 楠貨의 價格이 暴落하여 奴婢의 身貢도 더하여 받아들이게 하였다.^㉚ 그리하여 世宗 7년에는 奴婢의 餘貢을 楠貨 대신에 鑄錢을 사용하게 하였으

註 ㉒ 太宗實錄 卷13, 太宗 7年 正月 丁卯條.

㉓ 世宗實錄 卷28, 世宗 7年 6月 壬子條.

㉔ 世宗實錄 卷22, 世宗 5年 12月 丁卯條.

㉕ 世宗實錄 卷114, 世宗 28年 11月 甲戌條. 世宗實錄 卷115, 世宗 29年 正月 癸酉條.

㉖ 成宗實錄 卷44, 成宗 5年 閏 6月 戊申條.

㉗ 太宗實錄 卷20, 太宗 10年 8月 丙辰條.

㉘ 太宗實錄 卷31, 太宗 16年 5月 辛亥條.

㉙ 世宗實錄 卷11, 世宗 3年 2月 丁酉條.

㉚ 世宗實錄 卷20, 世宗 5年 6月 戊辰條.

나 鑄錢의 量이 모자라서 그 실시가 어렵게 되기도 하였다.^⑩ 이와 같이, 太宗 때 이래 주로 極貨로 받아들이던 奴婢의 身貢은 極貨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各司 奴婢의 身貢은 米・布로서 納付하도록 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身貢을 받아들이는 官廳도 太宗 때에는 濟用監에, 世宗 때에는 典農寺에, 그리고 世祖 때 이후에는 典農寺와 司贍寺가 병합됨에 따라 司贍寺에 納付하게 되었다. 每年 收納된 奴婢의 身貢은 國家 財政에 있어서 경상비로서 중요한 財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東倭나 北狄에서 歸順해온 者에 대한 需要를 비롯하여 이웃 나라에의 進獻 및 答賜禮物・進上馬價・倭料 그리고 兩界軍士祿俸에의 充差 등 그 用途가 多樣하였다. 每年 받아들이는 奴婢 身貢의 統計는 成宗 16年을 例로 들면, 緜布가 724,500餘匹, 正布가 18萬餘匹에 이르고 있다.^⑪

公賤은 이와 같은 身貢 이외에도 그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있었으니 그들이 소속한 각 官廳의 供饋를 부담하기도 하고 그들이 바치는 身貢의 부가세로서 輸轉價와 作紙를 納入해야 하였고,^⑫ 그 밖에 防納에 의한 奴婢에 대한 摧取도 대단한 것이었다.

2. 私奴婢의 立役과 身貢

私奴婢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公奴婢보다 그 數에 있어서 월등히 많았다. 公奴婢가 國家나 官衙에 그들의 義務內容을 다 하듯이 私奴婢는 그들의 上典 집에 그들의 義務를 다하였다. 私奴婢는 一般的으로 士庶의 집의 집안 일이나 雜役 또는 農業勞動에 종사하므로서 그들의 立役의 負擔을 履行하거나 上典에게 一定한 量의 身貢을 바치므로서 그들의 納貢義務를 履行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私奴婢의 義務負擔의 内容을 太宗 6年에 斷行된 寺社奴婢의 革罷 以前까지 私奴婢 所有者로서 가장 代表的인 寺院의 경우를 一例로 살펴 본다면, 高麗時代에는 寺社에서 田租와 함께 奴婢의傭을 거두었던 것이다.^⑬ 그리고 朝鮮 初期에도 寺社奴婢의 革罷 直前이던 太宗 5年의 史例에서 「土田之出」이라는 小作料와 「奴婢之貢」이라는 奴婢의 身貢을 거두었던 것으로,^⑭ 앞서 高麗時代의 田租와 奴婢의 働이 바로 이것이다. 朝鮮後期에는 奴婢가 本主의 田畠만이 아니라 他人의 田畠도 耕作하여 小作料를 納入하는 것이普遍化되어 있었으나, 朝鮮 初期에는 아직 奴婢가 本主의 田畠을 耕作하여 小作料를 納入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私奴婢는 家內에서는 그들 上典의 婢僕으로써 手足이 되어 여러가지 使役에 종사하면서 집 밖에서는 農民으로써 그들 上典의 農地를 耕作하였다.

世宗 때로부터 점차 貴族들의 農莊이 발달하게 되었다. 貴族들은 여기 저기 넓은 農莊을 소유하고 모두 奴婢로서 耕種하였거니와, 그 중에는 數百 數千의 奴婢를 거느리는 광대한 農

註 ⑩ 世宗實錄 卷26, 世宗 14年 6月 壬辰條.

⑪ 成宗實錄 卷184, 成宗 16年 10月 乙酉條.

⑫ 成宗實錄 卷16, 成宗 3年 3月 丁酉條.

⑬ 高麗史 卷111, 列傳 第24 趙噲條.

⑭ 太宗實錄 卷10, 太宗 5年 11月 癸丑條.

莊이 경영되기도 하였다. 貴族들이 많은 奴婢를 所有하여 奴婢 1千餘名을 소유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니, 太宗 때 南陽君 洪吉旼, 世宗 때 安望之의 妻, 文宗 때 柳漢 등의例를 들 수 있고^㊷ 成宗 때 永膺大君 琨의 奴婢는 萬名을 내리지 않았다 한다.^㊸ 貴族들의 農莊이 발달됨에 따라 劢力이 있고 數百 數千의 奴婢를 거느리는 광대한 農莊들은 그들의 權勢를 빙자하여 國家로부터 私奴婢에 부과된 徭役이나 貢賦의 免除는勿論 田稅도 가볍게 徵收하는 등의 特權이 베풀어졌다. 그리하여 一般 私家의 奴婢는 過重한 使役과 貢賦를 부담해야 했고, 노비들에게 부과되었던 徭役과 賦役까지도 더하여 부담해야만 했던 良民들은 그들의 過重한 부담을 避하기 위하여 農莊에 投托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私奴婢가 本主에 바치는 身貢은 朝鮮前期에 어느 정도이었는지 자세하지 않다. 앞에서 말해두었듯이 다만 繢大典 刑典 私賤條에 「隱漏奴婢推尋者雖累年之後只徵三年身貢」이라고 하였는데 그 細註에 「一年貢 奴綿布二匹 婢綿布一匹半」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체로 朝鮮前期에도 繢大典의 內容과 같이 私賤의 身貢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시의 社會的 基準이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國家나 兩班들의 奴婢에 대한 收奪은一般的으로 平準化된 傾向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니, 그것은 國家의 公奴婢에 대한 收奪 基準이 國家의 支配層을 形成하고 있는 兩班들의 私奴婢에 대한 收奪 基準에서 由來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것은 土地의 收取關係에 있어서 兩班 地主가 收穫의 半을 小作料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社會的 基準이 되었기 때문에 王宮이나 國家機關에서도 그 所有地로부터의 所出을 打算할 때에 그 수확의 半으로 잡는 것과 똑같은 事情이었던 것으로, 公奴婢에 대한 負擔基準은 당시의 一般 奴婢에 대한 社會的 負擔 基準에서 由來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私奴婢 중에는 上典의 手足이 되어 商販하는 자도 있고, 혹은 上典인 士大夫家의 農莊을 管理하며 農莊의 長利를 管掌하는 자도 있었다.

III. 奴婢의 身分의 性格

朝鮮前期의 身分制度에 있어서 奴婢는 社會階層 중의 最下層 最下賤의 身分이었다. 中國에 있어서도 奴婢는 社會의 最下層 身分이라는데 다를 바가 없겠으나, 우리 나라의 奴婢는 원래 中國의 奴婢에 比하여 社會的 法律의 處地가 보다 가혹하였다. 이와 같은 苛酷性은 그들에 대한 虐待 賤視와 그들 奴婢에 대한 世傳法에서 찾아볼 수 있다.

朝鮮前期에도 高麗時代와 같이 奴婢는 世傳되었다. 磬溪 柳馨遠도 우리나라 奴婢 世傳法에 대하여 그 苛酷性을 指摘하여 “中國에 비록 奴婢가 있으나 모두 犯罪者로서 没入된 者이거나 혹은 스스로 몸을 팔아 남에게 雇傭된 자 뿐이며 그 族系에 의하여 代代로 奴婢로 삼는 法은

註 ㊷ 太宗實錄 卷13, 太宗 7年 2月 庚子條, 世宗實錄 卷55, 世宗 14年 2月 丙申條, 文宗實錄 卷12, 文宗 2年 2月 丙寅條,

㊸ 成宗實錄 卷251, 成宗 22年 3月 癸卯條,

없었다”라고^⑧ 하고 있다. 經國大典 五, 刑典에 “凡賤人所系 從母役”이라 하여 賤人 즉 奴婢는 母의 役을 相續하게 되어 있고, 또 “唯賤人娶良女所生 從父役”이라고 하여 良人인 母와 賤人인 父가 結婚하여 낳은 子女는 父의 役을 相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父母가 모두 奴婢인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父母 중에 어느 한편만이라도 奴婢 身分이면 그 子女는 奴婢가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奴婢 世傳法은 高麗時代 이래 原則的으로 隨母法을 채용하여 왔고 例外로 奴와 良妻와의 所生은 從父法을 取하였다. 그러나 朝鮮 初期에 儒教思想의 영향으로 重父의 思想을 取하고^⑨ 한편으로 軍額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太宗 때에 良人과 公私婢子와의 所生 및 良人과 倡妓와의 所生에도 從父法을 적용하게 되었거니와, 이를 賤妾所生에게도 財產의分配가 주어졌다. 그結果 制限 없는 從父法은 公賤의 減少와 人倫의 어지러움을 가져 왔고, 당초에 뜻한 바 重父의 사상과도 矛盾되었다. 그리하여 世宗 때에 이르러 原則的으로 隨母法이 다시 채택되었고, 다만 상당히 높은 官職에 있는 자와 平民으로써 나이 40세에도 아들이 없는 자의 婢妾 所生만 從父法에 따르도록 制限을 加하였다.^⑩ 이와 같은 國家의 配慮는 儒教主義의 兩班社會에 있어서 儒教의 重父의 思想 즉 承重思想으로 이해되고 있다. 世祖 때에 잠시 良人으로써 보다 더 軍額을 增加시키기 위하여 從父法을 採用하였으나 이미 隨母法으로 還元되었다. 대체로 朝鮮 初期에 儒教의 承重思想과 軍額의 擴充을 위하여 從父法을 採用하고자 하였으나 그 無制限한 적용은 여러가지 副作用을 자아내어 經國大典에는 다시 高麗 以來의 隨母法이 채용되었는데 다만 宗親과 二品 以上의 賤妾 子孫 및 大小員人の 嫡子孫이 없는 妾子孫 承重者에게 從父法을 許하였다.

隨母法과 從父法이란 어느 面에서는 良賤의 區分이 되는 節도 있으나, 奴婢의 立場에서 보면 대체로 그들의 所生이 어느 上典의 所有가 되느냐 하는 規定이 될 뿐이며 奴婢들自身에 있어서는 奴婢 身分임에는 다를 바 없었다. 그러면 奴婢가 合法的으로 어여한 경우에 良人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經國大典에는 “凡奴婢因事功爲良者 以公賤充給”이라 하여 奴婢가 功을 세우면 良인이 될 수 있다는 規定이 있다. 그리하여 奴婢가 謀叛事件에 功을 세워 免賤되는 實例도 있고, 또 列女 孝子로서 免賤된 實例도 있으나 奴婢가 合法的으로 良인이 되는 길은 거의 막혀 있었다. 朝鮮 後期에는 納粟에 의하여 免賤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것이나 朝鮮 前期에는 아직 良인이 되는 길은 거의 막혀 있었다. 앞서 말해둔 바와 같이 經國大典의 規定에는 兩班과 婢妾 사이의 所生도 一定한 法的 手續을 거쳐 비로소 賞賜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즉 宗親 男子와 賤人 妻妾 사이의 所生은 그대로 아무런 制限 없이 良인이 될 수 있었으나 그밖에 大小員人에게는 정해진 制限이 있어 文武官・生員・進士・

註 ⑧ 柳馨遠 : 磻溪隨錄 卷26, 兵制.

⑨ 周藤吉之 : 上揭書 p. 38.

⑩ 世宗實錄 卷55, 世宗 14年 3月 甲申・乙酉・丙戌條.

錄事・有蔭子孫 및 嫡子孫이 없는 자의 妻子孫 承重者라는 主로 兩班들의 妻이 된 奴婢와의 所生만이 賞良할 수 있다고 規定되어 있다. 이들 兩班과 奴婢 사이의 所生을 補充隊(또는 補充軍)라는 軍役을 치루면 근근히 雜職에 任用되고 良人의 對遇를 받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 서는 그의 父가 掌隸院에 申告하면 掌隸院에서 事實을 調査하여 登錄시키고 그에 관한 文書를 兵曹에 提出하여 補充隊에 所屬시키게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補充隊를 통한 免賤의 길이 朝鮮 初期에는 良人層과 賤妾子와의 所生까지도 包含한 적이 있었으나 成宗 12年 이후로는 良人과 賤妾子 사이의 所生에게는 永遠히 賞良의 길이 막히고 말았다.

이렇듯 奴婢 身分은 嚴格히 世襲되었다. 奴婢로서 良人이 되는 길은 거의 막혀 있었다. 또 奴婢 身分과 다른 身分層과의 交嫁 所生도 兩班과 賤妾과의 所生 以外에는 良人이 되는 길이 막혀 있었던 것이다. 대체로 麗末에 得勢한 賤妾所生은 높은 官職에까지 오른 사람이 많았으나 朝鮮 初期에는 賤妾所生이 엄격히 눌려서 限品授職되고 文武科에도 應試하지 못했으며, 兩班 집과는 물론 婚姻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朝鮮 前期에는 奴僕으로써 高官에 오른 자가 참으로 僅少하였다.

高麗 末에는 兩班이나 寺院이 土地를 兼併함과 동시에 良人을 強制로 抑壓하여 賤人으로 삼는 일이 아주 甚하던 때이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良人層이 減少되고 奴婢의 數가 增加되었다. 朝鮮 初期의 奴婢 對策은 私賤을 公賤으로 만들어 國家의 財政의 基盤을 공고히 하려는 데 置重하였다고 하겠거니와, 그러기 위해서서 끊임없이 奴婢辨正事業이 推進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朝鮮 初期에는 다른 어느 時期에 比해서도 良人層이 奴婢層보다 우세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朝鮮 初期의 奴婢의 數는 麗末이나 朝鮮 中期에 比하여 보다 적은 시기라고 하겠다.

奴婢는 上典의 立場에서 본다면 土地와 같이 重要한 財產이었다. 즉 上典의 立場에서는 土地는 物質的인 資源이오, 奴婢는 人的인 資源이었기로 奴婢는 土地에서 그려하듯이 賣買・贈與・相續할 수가 있었다. 經國大典 戶典 賣買限의 條項에는 土地와 家屋의 賣買에 있어서 물릴 수가 있는 기한을 매매후 15日로 定해 있고, 매매후 100日內에 官廳에 申告하여 證明書를 受領하는 것도 奴婢가 土地나 家屋과 同一하게 取扱되고 있다. 奴婢가 牛馬와 同一視되었던 것은 牛馬賣買限과 同一한 條項에서 取扱된 것으로서도 알 수 있다. 高麗 末에는 奴婢의 매매가 盛行하였는데, 그 시기에 奴婢의 값은 牛馬의 값만도 못하여, 馬 1匹의 값이 奴婢 2, 3名에 해당되는 程度이었다.^⑩ 朝鮮 王朝의 建國에 즈음해서부터 朝鮮 初期에 걸쳐 奴婢의 매매에 禁止乃至는 制限이 있었던 것은 主로 奴婢가 土地와 짬여져 있는 生產者이기 때문이었다. 國家에서 土地의 매매를 禁止하는 것이나 奴婢의 매매를 禁止하는 것은 原則적으로 같은 立場에서의 일이었다.

註 ⑩ 高麗史 卷85, 刑法 2 奴婢.

經國大典의 奴婢 賣買에 관한 規定에서 國家가 可及的 奴婢의 賣買를 制限하고 있는 것은 土地의 賣買를 制限하는 產地와 같으며, 奴婢의 매매에 있어서 官廳의 許可없이 私私로이 매매한 경우에는 그 奴婢를 没收할 뿐만 아니라 그 價格까지도 没收하게 되어 있다. 즉 奴婢를 파는 사람만 損害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도 損害를 입도록 되어 있다. 要컨대 封建國家는 奴婢가 빈번한 매매의 對象이 되면 奴婢가 土地에서 離脫하게 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奴婢는 土地와 함께 賣買되기도 하였지만 土地와는 別途로 賣買되기도 하였다. 朝鮮 初期에는 麗末에 比하여 奴婢의 매매에 대한 禁止 乃至는 制限이 한층 嚴厉지기도 하였고, 國家 權力이 強化되고 生產關係의 發展에 따라 奴婢의 賣買도 麗末과 같이 盛行하지는 않았다.

經國大典 刑典 私賤條 奴婢賣買項에서 당시의 奴婢의 價格을 알 수 있다. 나이 16세 以上 50세 以下의 壯年 奴婢 1人의 價格은 楠貨 4千張이며, 나이 15세 以下 50세 以上은 3千張으로 規定되어 있다. 이에 앞서 建國初 太祖 7년의 記錄에는 당시의 奴婢 價格은 비싸야 五升布 150匹인데 馬 1匹의 價格은 4, 5百匹이기로 奴婢의 價格을 나이 15세 以上 40세 以下은 4百匹, 14세 以下 41세 以上은 3百匹로 改定되고 있다.^⑫ 奴婢의 價格을 먼저 米價로 比較해보면 楠貨 1張은 米 1升이었기로 4百斗로 全 20石이 된다. 이를 馬價에 比하면 上等馬 4千張과 같다. 그리고 楠貨 20張은 縹布 1匹로 換算됨으로 壯年 奴婢의 價格 4千張은 縹布 2百匹이 된다.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朝鮮 王朝의 建國 이후 奴婢의 價格이 騰貴하였다고 할 수 있다.

奴婢의 上典은 奴婢를 죽일 수 있는 法律的인 權限이 있었다. 그러나 國家는 上典의 마음대로 奴婢를 죽이는데 대하여는 一定한 制限을 加하고 있거니와, 그것은 朝鮮 初期에 中央集權이 強化되었던 시기에 問題視되었다. 上典이 奴婢에 대하여 마음대로 刑罰을 내릴 수가 있었으나 죽일 때에는 官廳에 申告하여 許可를 받도록 規定되어 있다. 官廳의 許可를 받지 않고 참혹한 方法으로 奴婢를 죽인 경우에는 殺害한 자에게 棍杖 60個, 徒刑 1年 또는 棍杖 100個의 刑罰에 처한 위에 被殺된 奴婢의 家族에 대하여 私奴婢에서 公奴婢로 그 所屬을 바꾸어 주는 措處를 취하였다. 그러므로 奴婢는 그들의 父母나 兄弟姊妹가 参與한 刑罰을 받거나 被殺되었을지라도 그의 上典 집에서 종으로 살아야만 했고, 上典이 官에 申告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들의 父母나 兄弟姊妹를 参與하게 殺害하였을지라도 그 家族은 겨우 그 上典의 집을 떠나 公奴婢가 되는 變動이 있을 뿐이었다. 奴婢는 그의 上典이 謀叛 陰謀가 아닌 以上 어떠한 犯罪일지라도 官廳에 申告할 수 없었다. 즉 上典을 官에 告解바치는 것은 道德的으로 綱常을 짓밟는 것이 되어 法律的으로 紂殺에 해당하는 重罪를 犯하게 되는 것이다. 經國大典 刑典 告尊長條에 의하면, 家長에 대하여 奴婢의 관계는 그 家長의 子孫 妻妾과 더불어 棍杖 1百, 流 3千里라는 무거운 刑罰을 받아야만 했다. 奴婢와 上典과의 관계는 父子 夫婦와의 區分, 人君

註^⑫ 太祖實錄 卷14, 太祖 7年 6月 癸未條.

과 臣下와의 관계이었다. 그러나 星湖 李灝이 指摘하고 있는 바와 같이 “人君은 臣下에게 尊位와 祿俸을 주어 恩德을 보이는데, 上典은 奴婢에게 餓寒만을 겨우 免하게 하며 苦役만을 負擔시키며, 刑罰은 내리되 賞은 내리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不忠이라고 책망한다”⁴³⁾는 것이 었다.

朝鮮 初期에도 奴婢의 濫殺을 制限하는 法律的 規定은 아주 不徹底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不徹底한 規定마저도 朝鮮 初期에 中央集權이 強化되고, 統治階級이 社會的 生產과 人命에 对하여 보다 많은 配慮를 한 시기이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라 하겠다. 高麗 末이나 朝鮮 中期와 같이 中央集權이 弱化되고 支配層의 腐敗가 尤甚하면 시기에 있어서는 奴婢의 濫殺은 事實上 法의 間題視되지 않았다.

앞서 奴婢를 그 所有者인 上典의 性格에 따라 公賤과 私賤으로 區分하였으며, 또한 奴婢의 義務 負擔의 內容에 따라 選上奴婢와 納貢奴婢로 區分한 바 있다. 그런데 奴婢는 그들 奴婢 家戶의 生活하는 곳에 따라 率居奴婢와 外居奴婢로 크게 나누어진다. 먼저 私奴婢의 경우 한 家戶의 奴婢가 그들 上典의 家族의 一員으로써 生活하고 있는가, 혹은 그 上典으로부터 獨立한 家戶와 家計를 維持하면서 生活하는가에 따라, 前者를 率居奴婢 또는 家內奴婢라고 하고 後者를 外居奴婢라고 한다. 다음으로 公奴婢의 경우, 이러한 基準에서 본다면 모든 公奴婢는 거의 대부분이 外居奴婢의 範疇에 속한다고 하겠다.

率居奴婢의 上典이나 그 家族에 대한 관계는 星湖 李灝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天地・父子・夫婦・君臣 등의 관계와同一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率居奴婢는 그 上典의 家族의 一員으로 生活하면서 上典의 家庭에 둑여 모든 使役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당시 兩班이란 勞動을 아주 賤히 여기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므로 奴婢들이 祭祀 등을 비롯한 여러 儀式과 雜役에 下人 노릇을 해야했고 紡織이나 農事 일에 종사해야만 했다. 率居奴婢 중에는 그一部가 上典의 賤妾이 되거나 日常 下人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 奢侈奴婢의 性格을 나타내기도 하였지만, 그 중一部는 兩班 上典 집에서 直接 農事 일에 使役되는 경우도 많았고, 또 奴婢의 上典이 兩班이 아닌 農民의 경우에는 흔히 農事에 直接 使役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은 앞서 말한 奢侈奴婢는 아니었다. 그리고 率居奴婢는 經國大典 三, 禮典 戶口式條에 보이는 것처럼 그의 上典의 戶口에 雇工과 더불어 記載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外居奴婢는 率居奴婢와는 달리 上典과는 獨立된 自己의 家戶와 家計를 維持하면서 生活하는 奴婢이다. 外居奴婢는 그들의 上典인 國家 王宮 또는 兩班上典에게 그들의 身貢을 支拂해야 하는 것以外는 率居奴婢와 다른 法律의 規定은 없었다. 私奴婢 중의 外居奴婢는 身貢을 바치는 대신으로 身貢의 價格에 해당하는 程度의 勞力를 上典에게 提供하는 자도 있었다. 그러므로 率居奴婢를 除外한 外居奴婢는 公私奴婢를 除外하고 身貢을 바치거나 一定한

註 43) 李灝: 星湖僊說 卷3, 人事篇 親屬門.

期間을 定해두고 그 上典을 위하여 努力を 提供하는 것이었다.

奴婢는 土地와 家屋과 奴婢 등을 所有할 수 있었으니 모두 外居奴婢의 경우이다. 經國大典에 公私賤이 子女 없이 死亡한 경우에는 그의 上典과 해당 官廳이 그의 所有이었던 田宅과 奴婢를 따로 따로 處理하여 所屬시키는 規定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奴婢가 子女를 두고 死亡할 경우에는, 그의 子女가 田宅과 奴婢 등의 遺產을 相續하게 되는 것을 말해 준다. 물론 이와 같은 規定이 있다고 해서 당시의 대부분의 奴婢가 田宅과 奴婢를 所有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少數일지라도 그와 같은 奴婢도 있었던 것이다. 奴婢 중에는 土地와 家屋과 그리고 奴婢까지도 모두 所有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세가지 중에 두가지나 다만 한가지만을 所有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며, 또는 세가지 중에 어느 한가지도 所有하지 못한 奴婢도 있었던 것이다.

外居奴婢 중에는 상당한 財產을 모은 자도 있었다. 世宗 때에 富強한 奴婢들은 그들에게 罷免을 避하기 위하여 官吏를 買收하기도 하였다. 또 奴婢의 勢力이 上典을凌駕하여 上典에게 身貢을 바치지 아니할 정도의 경우도^④ 없지 않았다. 外居奴婢 중에서도 이렇듯 自己의 土地와 家屋을 所有하는 奴婢는 그들이 國家에 대한 負擔만을 지는 隸屬民이지만 이러한 奴婢가 많았다고는 볼 수 없다. 外居奴婢로서 致富하여 田宅과 奴婢까지 所有하는 奴婢는 極히 少數이었다. 朝鮮 前期의 外居奴婢는 대부분 上典의 土地를 耕作하면서 그 土地에 結縛된 農民이었다. 그러므로 그 上典과의 隸屬關係에 있어서 깊은 紐帶關係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上典이 그 耕作하는 土地를 買渡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奴婢가 그 土地와 뜻여서 팔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奴婢는 흔히 中世 西歐의 農奴와 비슷한 類型으로 이해되고 있다.

全體 奴婢 중에서 率居奴婢인 奴婢와 外居奴婢 중 富裕한 封建的 隸屬民의 類型인 奴婢를 모두 합쳐 보아도 全體 奴婢의 몇分의 1도 못되었다. 그러므로 全體 奴婢 중에서 絶對的으로 그 數가 많은 것은 앞서 말한 農奴에 해당된 外居奴婢이었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奴婢는一般的으로 農奴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要約하면 朝鮮 前期의 奴婢身分層에는 奴隸, 農奴, 封建的 隸屬民이라는 세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의 類型은 封建的 土地所有關係에서 그들의 位置가 서로 다른 것이었다. 外居奴婢 중, 兩班 地主의 土地를 耕作하는 農奴와 奴隸와의 差異點은 生產者로서 生產手段에 대한 關係가 서로 相異하였다. 農奴는 生產手段을 占有하고 있는 자로서 自己의 經理와 生產道具를 가지고 있는데 反하여, 奴隸는 生產手段을 占有하지 못하여 自己의 經理와 生產道具를 所有하고 있지 못하였다. 그리고 農奴는 그의 上典이 不完全 所有者로서 賣買할 수 있었으나 濫殺하지는 못한데 反하여, 奴隸는 그의 上典이 完全 所有者로서 賣買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社會經濟的인 處地의 差異

註④ 金錫亭 : 上揭書 p. 69에서 身貢을 받으려 갔다가 外居奴婢에게 殺害되었다는 王亂 때의 義兵將 金德齡장군의 妻家의 外居奴婢의 例를 들어 說明하고 있다.

와 그들에 대한 法律的 規定 등의 差異가 있었다. 그러므로 아주 制限된 意味이기는 하지만 自己의 家計를 維持하며 生產手段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農奴와 奴隸와를 區分하는 것이다.^⑤

率居奴婢와 外居奴婢 사이에는 社會經濟的인 存在形態에 있어서 本質的으로 差異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奴婢身分으로써 특히 한 上典의 所有下에서는 서로 交替되었다. 즉 選上奴婢와 納貢奴婢가 替り 交替되듯이 率居奴婢가 外居奴婢로 되는 경우도 있고, 反對로 外居奴婢가 上典의 要求에 應하여 率居奴婢로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外居奴婢의 家族 중의 한 家族員이 上典의 要求에 따라 率居奴婢로 되는 경우 등도 있었다.

IV. 奴婢의 社會經濟的 機能

奴婢는 最下層 最下賤의 身分層으로써 良人과 더불어 直接的인 生產 階層이었다. 奴婢는 具體的으로 어려한 職業에 종사함으로써 生產에 이바지하였으며, 또 그들의 職業이 그들의 生活에 어떻게 연관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公奴婢 중 選上奴婢는 京中이나 地方에 立役하였을 때의 일이란 반드시 本來의 職業과 一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이 모두 自己의 家戶와 家計를 維持하면서 番을 나누어 立役하였는데, 立役하지 않을 때에는 自己집에서 家族과 함께 本來의 職業에 종사하였다. 選上奴婢의 職業은 주로 農業이었거니와 그들은 納貢奴婢와 別다른 制限이 없이 交替되기도 하였다. 물론 納貢奴婢도 主로 農民이었는데 그들로부터는 身貢으로 繼布를 받았음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驛奴婢는 經國大典에서 소위 自耕無稅라는 馬田·院田 등의 土地를 스스로 耕作하여 그 收穫에서 生計를 維持하면서 驛에서의 일에 從事하였다.

選上奴婢이건 納貢奴婢이건 公奴婢의 대부분이 農民이었다. 太宗 5年에 寺社奴婢를 屬公하였을 때, 그들을 각각 寺院의 十里밖에 農事를 지어 살게하고 立役하는 奴婢以外 奴婢의 身貢과 土地 所出은 아울러 모두 거두도록 措處하고 있는 것을 보면,^⑥ 당시 奴婢의 生業이 農業이었으며 또 奴婢들은 그들의 身貢을 農耕에 의한 收穫物로 바쳤음을 말해주고 있다.

私奴婢 중 率居奴婢는 그 上典 집에 한 家族으로 살면서 賤妾이 되거나 下人으로써 여러가지 使役을 하는 자도 있었으나, 이와 같은 奢侈奴隸의 性格을 띤 奴婢의 數는 그리 많지 않았다. 兩班 地主가 면 곳에 있는 土地는 外居奴婢나 혹은 小作人에게 耕作시켜 그들로부터 身貢이나 小作料를 거두어 들였지만 門前의 田畠은 直接 管理하여 率居奴婢로 하여금 耕作하게 하는 일이 많았다. 또 率居奴婢 중의 婦는 上典 집에서 배짜는 일을 맡기도 하였다.

外居奴婢 중에는 兩班 地主의 土地를 耕作하는 農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直

註 ⑤ 金錫亭: 上揭書 p. 19, pp. 77~8.

⑥ 太宗實錄 卷10, 太宗 5年 11月 癸丑條.

接 그의 上典인 兩班 地主에게 小作料를 바치면서 그밖에 國家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負擔을 적으나마 間接的으로 負擔하고 있었다. 朝鮮 前期에 있어서는 私奴婢가 雜色軍의 編成에 들어 있음은 바로 이를 말해주고 있다. 당시에 있어서 土地所有者인 兩班 地主들은 그들의 農土에 대하여 一定한 租稅 및 賦役의 義務가 부과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義務는 恒常 官僚的 特權이나 非合法的 方法에 의하여 實事上 免除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特殊한 경우를 除外하면 兩班 地主들에게 그와 같은 義務가 完全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率居奴婢의 경우에 있어서도 國家와 上典과의 關係에서 招來된 어느 정도의 負擔을 지니고 있었다.

다음으로 土地와 家屋과 奴婢까지도 所有하는 富裕한 外居奴婢는 封建的 所有關係에 있어서 良人의 類型과 同一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奴婢 農民은 奴婢 身分에서는 어느 程度 離脫된 사람들이었으나 거의 良人 農民과 同一한 處地에 놓여 있었다. 그들이 奴婢 身分인 것은 다만 世襲的 傳統과 法制的 힘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듯 奴婢에는 封建的 隸屬民과 農奴와 奴隸까지를 包含하는 것이었으나 本質的으로 당시의 奴婢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農奴가 基本層이 되고 여기에서 派生된 封建的 隸屬民이 있었으며 이밖에 奴隸도 包含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高麗末에 土地制度의 紊亂으로 發達된 農莊은 麗末의 私田改革으로 朝鮮 初期에는 잠시, 위축되었다가 世宗 때로부터 다시 擴大되기 시작하였다. 이 農莊에서는 그 耕作은 물론 管理에 이르기까지 奴婢의 손이 미치고 있었다. 官僚나 王子 公主 등에게 賦給된 土地도 奴婢로서 耕種되었거나, 날로 擴大해가는 權門勢家의 農莊에서도 奴婢가 農業生產者로서 또는 管理人으로써 그 役割이 增大하여 갔던 것이다. 士大夫家에는 1千餘名에 達하는 奴婢를 所有한 사례도 몇군데 發見되는 바이며, 그들 奴婢 중에서 本主의 田庄을 管理하는 奴婢로 管庄奴, 幹事奴僕, 幹僕 등으로 呼稱되어, 田庄의 管理만이 아니라 土地와 奴婢의 賣買도 委任되었다. 특히 內需司와 大君以下 世家의 管庄奴는 長利를 盛히 行하였다. 世宗實錄에서 “下三道는 土地가 肥沃하고 物產이 豐盛하며, 朝廷 臣下의 農莊에는 奴婢가 過半이다”라고^{④7} 하는 表現은決코 誇張된 것이 아니었다.

奴婢는 良民과 함께 農民 階層을 構成하는 農業 生產者로서 그 主業이 農業이라 함은 여러 번 말해둔 바와 같다. 그러나 奴婢 중에는 工匠으로써 手工業에 종사하는 자도 있었다. 朝鮮 初期의 工匠의 構成員으로는 寺奴婢 官奴婢 良人 私奴婢 그리고 僧侶까지도 끼어 있었으며 繁要한 匠人이 闕員일 때에는 軍士, 保卒, 閑役人까지도 工匠에 充當하였다 한다.^{④8} 工匠의 基本層을 構成하는 要素는 역시 良人과 奴婢이었는데 奴婢 중에서도 公奴婢이었다. 公奴婢가 工匠의 基本層이 되었던 것은 寺社奴婢를 革罷함으로써 公奴婢가 된 寺奴婢를 主軸으로 하는

註 ④7 世宗實錄 卷124, 世宗 31年 4月 癸丑條.

④8 大典後續錄 工典 工匠條.

公奴婢이었다. 그리고 經國大典 工典, 工匠條의 京外工匠成籍의 項目에서, 그 細註에 보이는 바와 같이, 私奴婢는 工匠에 所屬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大體로 朝鮮 前期의 手工業은 全的인 奴隸的 性格에서 벗어나 良賤 並行 내지는 良人 中心으로 옮겨가고, 燕山君 中宗 때를 前後하여 官匠制 手工業이 그 自體의 矛盾 등으로 점차 崩壞되어 갔으며, 이와 같은 官匠制의 崩壞에 並行하여 自然히 私匠制가 擡頭하게 되었다.^⑩

당시에 工匠이 되어 官營手工業場에 立役하는 사람 중에는 手工業을 職業으로 삼는 사람도 있었겠으나 반드시 本來의 職業이 手工業者라고는 할 수 없다. 官營手工業의 種類로서 經國大典 工典에 기록된 것 중에는, 地方이나 京中에서 그것만으로 獨立된 營業을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많았다. 工匠 人員 全體의 47.7%가 京工匠이었고 工匠의 種類別에 있어서도 京工匠이 129種인데 外工匠은 27種에 不過하며 그 品目은 主로 武器 製作과 支配階級의 生活品과 奢侈品의 製作이 中心이었으며 또 中央 中心으로 運營되었다. 그리고 京工匠 중에서 그 三分之一이 尚衣院 司饔院 內需司 등의 特殊 官衙에 屬해 있으며 京外工匠이 慶尙道 地方에 가장 많으며 朝鮮王朝의 手工業이 主로 王室과 高級官吏 中心이었다는 事實과 京外手工業이 鄉・所・部曲과 같은 特殊村落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시 世宗實錄 地理志나 慶尙道 地理志에 의하면, 地方에서 農業으로부터 分離된 手工業 部門이 될 정도의 것은 겨우 陶磁器業 製鹽業 漁業 및 極少數의 製鐵業 製紙業 등이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手工業도 全혀 農民으로부터 分離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京中이나 地方에서 工匠으로 立役하는 選上奴婢는 많은 農民이 끼어 있었던 것이다.

앞서 言及하였듯이 朝鮮 初期에는 京工匠이나 外工匠이 모두 奴婢는 아니었지만 대부분이 奴婢이었으며 工匠은 다른 役이 없고 番을 나누어 立役하며 朔料나 月俸이 支給되었다. 또 良賤을 막론하고 優秀한 工匠들에게는 雜職 遷兒의 벼슬이 주어졌다. 그리고 工匠의 製作活動에 있어서도 官匠制의 體制의 矛盾으로 말미암은 不精品의 製造에 대하여서는 혹심한 刑罰을 받아야만 할 정도로 제재를 받았다. 工匠들이 公役에 종사하는 以外 私企業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日數만을 計算하여 紳稅하게 되어 있었다.

한편 奴婢는 당시에 商業이 末業이기에 表面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兩班들을 대신하여 商販에 종사하였다. 혹은 富商의 奴婢로서 商業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奴婢에게는 原則의 으로 軍役의 義務는 없었다. 앞서 말해둔 바 있는 補充軍은 朝鮮 初期에 賤妾 所生에 대한 政策의一部로서 各品의 賤妾 所生을 대체로 補充軍에 所屬시켜 軍役 뿐만 아니라 營繕 雜役에 종사하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賞良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다만 奴僕으로 구성된 兵種으로는 한 때 壯勇隊와 韓強隊에 入屬할 수 있었다. 즉 壯勇隊는 世祖 5年에 創設되어 公私 賤의 武勇있는 자를 取才하여 合格된 자로서 編成하여 上林園職이라는 雜職으로 五品 以下에

註 ⑩ 姜萬吉：朝鮮前期工匠考 史學研究 12號, pp. 63~72, 1961.

叙用하고, 去官後 公奴婢는 免役하며, 私奴婢는 公奴婢로서 本主에게 充當해 주며 自身은 免役되었다.⁵⁰ 壯勇隊가 創設된 때에는 京中과 兩界에서 試取하였고, 다음 世祖 6年에는 下三道에서 試取하여, 世祖 7年 毛憐衛의 討伐, 世祖 13年 李施愛의 平定에 功을 세운 자가 많았다. 그러나 成宗 元年に 公私賤의 壯勇隊에의 入屬을 不許하게 되었다.⁵¹ 彎強隊는 世祖 8年에 여러가지 軍士中에서 彎弓 120斤者로서 編成되었는데 世祖 13年에 賤人의 120斤者도 이에 入屬시켜 六品去官되었다.⁵² 이 때에 壯勇隊와 彎弓隊를 合하여 1,350名이나 되었는데 뒤에 成宗 元年に 이르러 壯勇隊와 함께 良人만이 入屬하는 바가 되고 賤人的 入屬이 禁止되었다.⁵³

結　言

以上으로 朝鮮 前期의 奴婢에 대하여 公奴婢와 私奴婢 및 그들의 法的인 義務負擔인 立役과 身貢을 비롯하여 奴婢의 身分의 性格과 社會經濟의 機能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社會階層 중 賤人의 大부분이 奴婢이었다. 奴婢는 그들의 所有者인 上典의 性格에 따라 公奴婢와 私奴婢로 區分되거나, 대체로 私奴婢에 比하면 公奴婢의 頤이 그들의 社會的 地位에 있어서 보다 優位이었다. 한편 奴婢가 國家나 官衙 또는 兩班이라는 上典에게 짚어진 義務負擔의 內容에 따라 選上奴婢와 納貢奴婢로 區分할 수 있는데, 選上奴婢란 立役하는 奴婢를 指稱하는 것이며, 納貢奴婢란 身貢을 바치는 奴婢를 呼稱하는 것이려니라, 選上奴婢에 比하여 納貢奴婢의 頤이 그 義務 負擔에 있어서 보다 가벼운 것으로 理解된다. 이와 같은 處地는 公奴婢의 경우에 限하는 것이 아니라 私奴婢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었다.

다시 奴婢는 率居奴婢와 外居奴婢로 區分되거나 그 基準은 奴婢도 家族이 있는 것인 바, 奴婢의 家戶가 兩班 上典의 집 올안에서 살림을 하는 경우에는 率居奴婢이고 奴婢가 한 家戶로서 獨立하여 家計를 維持하는 경우는 外居奴婢라고 하였다. 率居奴婢는 外居奴婢에 比하여 그들의 社會・經濟的 地位가 보다 낮은 頤이라 할 수 있다. 또 奴婢의 義務負擔은 私奴婢보다는 보다 優位에 있었다고 할 公奴婢에 있어서도 그들 한 家戶에 주어진 負擔이 良人에 比하여 倍나 무거운 것이었다.

奴婢는 社會階層 중 最下層이려니와 우리나라 奴婢法의 特徵은 苛酷性을 들 수 있다. 中國의 奴婢는 우리 나라의 奴婢와는 그 處地가 달랐다. 우리나라의 奴婢에 대한 苛酷性은 奴婢世傳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中國의 경우에는 父母 중에 한 사람이 良人이면 그들의 所生은 良인이 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라도 奴婢인 경우에는 그 所生이 奴婢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奴婢가 良人으로 되는 길이란若干의例外는 있을지라도 거의 길이 막

⁵⁰ 世祖實錄 卷17, 世祖 5年 9月 丁酉條.

⁵¹ 成宗實錄 卷3, 成宗 元年 2月 乙卯條.

⁵² 世祖實錄 卷28, 世祖 8年 6月 乙酉條.

⁵³ 世祖實錄 卷43, 世祖 13年 4月 乙亥條.

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朝鮮 初期의 奴婢 對策은 私賤을 公賤으로 만들어 國家의 財政的 基盤을 鞏固히 하려는데 置重하였거니와,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奴婢辨正事業이 推進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朝鮮 初期는 麗未이나 朝鮮 中期에 比하여 良人의 數가 優勢한 시기이었다고 하겠거니와, 朝鮮 初期에 있어서 奴婢의 數는 全 人口의 四·五分之一 정도가 아닌가 짐작되는 바이다.

奴婢는 土地와 같이 重要한 財產이었기로 土地에서도 그려하듯이 賣買 贈與 相續할 수 있었다. 國家가 奴婢의 賣買를 制限하였던 것은 土地에 結縛된 奴婢의 流亡을 두려워한 나머지 채택된 政策이었다. 또 奴婢의 價格은 麗未에 比하여 보다 비싸졌다고 할 것이다. 또 上典에게는 奴婢를 죽일 수도 있는 權限이 있었다. 그 反面, 上典과 奴婢와의 關係는 人君과 臣下, 父子・夫婦 關係에 비기듯이 上典에 대하여 謀叛罪 以外에는 官에 申告할 수 없었던 것이다.

朝鮮 前期의 奴婢에는 대체로 奴隸 農奴 그리고 封建的 隸屬民의 세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封建的 土地所有關係에서 그들의 處地가 서로 다른 것이었다. 그리고 이 奴婢의 세가지 類型 중, 壓倒的으로 많은 數를 占하는 것은 農奴의 類型이었다고 하겠다.

奴婢를 職業別로 나눈다면 그 대부분이 農民이었다. 公奴婢는 물론 大部分이 農民이었고, 私奴婢의 경우에 있어서도 率居奴婢 가운데 혹은 上典의 賤妾이 되거나 下人이 되는 奢侈奴婢도 若干은 있었으나 역시 大部分이 農民이었다. 奴婢 중에는 工匠으로 手工業에 종사하는 자도 있었다. 그 중에는 半農半工의 奴婢도 많았다. 그리고 奴婢에게는 元來 軍役의 義務는 없었으며 雜色軍의 編制에 들어 있는 것 뿐이었다.